

##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#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1. 11. 15 규칙 제65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융자신청 시기)**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, 2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.

**제3조(구비서류)**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자금융자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
2. 등록금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
3. 보증인의 재직증명서(별지 제2호서식) - 퇴직금의 2분의 1 초과 시 제출

**제4조(대상자 결정)**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융자대상자와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학자금 융자 기록관리)**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서 통보된 학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상환현황 및 이자보전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신상변동신고)** 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무기계약근로자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자금융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(별지 제3호서식)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

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칙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융자된 학자금 및 이자 보전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호서식]

학자금융자신청서(제3조 관련)

신청인	소 속	성 명			주민등록 번호	전화 번호	화호		
	임용 연월일	년 월 일	재직 기간	년 월				현금	천원
학생	성명				등록금 고지내역	입학금	원	기대부금	원
	주민등록 번호					기성회비	원	금회 대부금	원
	관계					수업료	원	대부총액	원
	학교명 (년재국, 공, 사립)	학교 학과 학년				계	원	대부수	회
소속	임용년월일				재직기간				
기관	현재퇴직금				기대부금액				
확인인	확인자	소속 :      직 :      성명 :      (인)							
사항	기관장 확인				(직인)				
<p>「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     (인)</p> <p><b>용인시장 귀하</b></p> <p>본인은 상기 대부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을 보증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보증인 :      (인)</p>									
<p>첨부서류 : 1. 재학증명서(재학생) 또는 합격통지서(신입생)      2. 등록금 납입고지서(사본) 또는 영수증(사본)      3. 보증인의 재직증명서(퇴직금의 2분의 1 초과시 해당)</p>									

\* 보증인은 본인이 직접 자성 날인 후 주민등록증을 사본을 제출

\* 신청인은 굵은 선 부분만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

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2호서식]

**재직증명서**(제3조제3호 관련)

신청인	소속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전화번호					
	임용연월일	년	월	일	재직기간	년		월	현재퇴직금	천원	각종대부금액	천원
용도		학자금 보증용										
소속기관	임용년월일		년		월	일	재직기간		년		월	
확인사항	현재퇴직금				천원		기대부금액				천원	
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  신청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												
귀하												
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.  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  확인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소속기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직인)												

※ 신청인은 굵은 선 부분만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

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3호서식]

학자금융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

(제6조제1항 관련)

신고인	소 속	성 명	주민등록 번 호			
학 생	성 명	학교명	학 년			
				변동내용	변동일자	사 유
<p>위와 같이 학자금융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의 신상 변동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						
						신고인 (인)
용 인 시 장 귀하						
<p>※ 첨부서류</p> <p>졸      업 : 졸업증명서 1부</p> <p>중도퇴학 : 제적증명서 1부</p> <p>휴      학 : 휴학증명서 1부 (휴학자는 유학예정기간을   년   월 기재)</p> <p>복학, 학교변동, 유급 등 : 재학증명서 1부</p>						